

한눈에 알아보는 재정지원·위험성평가 사업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사업목적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

신청기간

2023. 1. 17.(화) ~ 별도 공고일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급금액

공단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기지원금이 있는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제외)
 2.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
 4. 태양광패널 설치·작업 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고소작업대 임차료 지원)
 5.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지원)



지급품목

사업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시설 및 장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2)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 (3)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공급 및 취출) (4)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5)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울 등) (6) 크레인안전장치 (7) 천장크레인(3톤미만,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 교체) (8)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9)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 (10) 지게차 안전장치
(전·후방 카메라,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추락방지 시설(계단, 사다리, 안전난간 등) (12)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13) 고소작업대 (14)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15)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환기팬, 복합가스측정기, 용접불연포 등) (16) 소음방지시설 (17)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 (18) 사회적이슈품목
(코로나19집단감염 방역품목, 폭염재난대책 예방설비) (19)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20)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21)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설비(자동화설비 등) (22)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기) |
|--|--|

※ 단, 당해연도 융자금,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중복신청 불가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목적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대해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확산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신청기간

홈페이지 별도공고 예정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급금액

공단판단금액의 **80%**,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급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제외)
 2.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로더, 지게차, 콘크리트 펌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받은 설비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경우 제외)



지급품목

지급대상설비(19종)

(1)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11) 지게차 운행 충돌방지 시스템
(2) 산업용 로봇 작업 통합안전 시스템	(12) 이동식 크레인 통합 전도방지 시스템
(3) 자동화 기계설비 통합안전 시스템	(13)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통합 전도방지 시스템
(4) 고정식 접근 경보장치	(1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통합 전도방지 시스템
(5) 이동식 접근 경보장치	(15) 인화성가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6)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16) 이륜차 충돌 보호용 에어백 조끼
(7) 인공지능(AI) 기반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17) 근력보조 슈트
(8) 크레인 운반화물 흔들림 방지장치	(18) 인간공학적 보조장치
(9) 지게차 전도 방지장치	(19) 스마트 귀마개 이어폰
(10)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지능형 충돌방지 시스템	

※ 안전인증, 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합격판정 또는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사업목적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신청기간

2023. 1. 9.(월) ~ 별도 공고일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 한도,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1. 용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년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사업주 자부담금 용자지원 가능



지원품목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및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등

구분	지원대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타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국소배기장치(작업환경측정 대상), 자동차 도장부스 지게차(3ton 미만 전동식) 등

※ 결정일 이전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제외, 신규설비에 한함

※ 용자결정금액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수입어음결제액은 전액 선지급 가능

안전투자혁신사업



사업목적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된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신청기간

2023. 1. 18.(수) ~ 3. 15.(수) 까지(예정)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1. 위험기계 교체 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만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부담방식
이동식크레인	2009. 9. 30. 까지 생산된 기계 (카고형)	2020. 12. 31. 까지 해당 위험기계를 소유한 사업주에 한정,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일시금직접납부방식 또는 금융방식(리스·할부)
고소작업대	2009. 6. 30. 까지 생산된 기계 (차량탑재형)		
리프트	2020. 7. 16. 까지 생산된 기계 (권동식, 원치식, 유압식)		
노후 위험기계교체	1992. 12. 31. 까지 생산된 기계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해당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 기존설비 폐기	

2. 위험공정 개선 소요비용의 50%, 최대 1억원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부담방식
뿌리공정 보유사업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	제조공정개선	일시금직접납부방식 또는 금융방식(리스·할부)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일시금 직접납부 방식 선택 시 자부담 부분에 대해 공단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가능 (10억 한도, 연리 1.5%)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목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와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

신청기간

홈페이지 별도공고 예정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지원금액

- 국소배기장치 등(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흙은 최대 2천5백만원
 - 개별 휴게시설(최대 3천만원), 공동 휴게시설(최대 1억원)

지원대상

1. 국소배기장치 등: 가스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2. 개별 휴게시설: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공동 휴게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동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 제외대상: 산재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등



지원품목

구분	지원대상
국소배기장치 등	국소배기장치, 발산원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 등
휴게시설	컨테이너하우스, 조립식 휴게실, 휴게실의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쇼파·의자, 테이블·탁자, 조명시설

- ※ 결정일 이전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제외, 신규설비에 한함
- ※ 당해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금), 안전투자 혁신사업,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건강일터 조성지원 지원 불가함(반대의 경우도 불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용자지원관련」 자주하는 질문(Q&A)

공통

Q. 보조·용자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설비 투자완료 후 공단 지급 및 대여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보조금의 경우 실 소요금액 납입 후 추후 사업장에 공단판단금액 지급)

Q.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양산품이 아닌 공사품도 구매가능한가요?

A. 공사품의 경우도 신청가능하나, 사업별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전문기관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자

Q. 양식 중 대출거래예정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는건가요?

A. 신청서 제출 전 은행에 방문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으로서 은행에서 사업주의 신용 및 보증방법을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Q. 안전인증 심사 중인 제품을 신청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자자금 결정 시 조건부 결정으로서, 투자완료확인서 제출시 안전인증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불합격한 경우 지원결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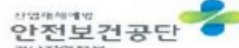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Q. 지원한도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10년 전 지원받은 보조금의 경우 초기화 됩니다. 또한,
1. 고용증가 사업장,
2.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3.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
4.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의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 ①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②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 ③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④기타각종제조업 ⑤석재및석공품제조업
- ⑥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 안전투자 혁신사업 관련 Q&A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참조



접수 및 문의방법



신청방법 신청서양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

구분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보조)*	clean.kosha.or.kr
	안전투자혁신사업	anto.kosha.or.kr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kosha.or.kr (경남지역본부 알림마당 신청서 양식 참고)

*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문의처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사업 담당자 앞

접수처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사업
안전보건2부	박다은 과장(055-269-0546)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박가영 과장(055-269-0545)	융자, 안전투자 혁신사업
안전보건3부	이정완 과장(055-269-0524)	건강일터 조성지원

참고사항



문의사항 또는 사고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끼임, 추락관련 품목을 제안하고 싶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안내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선라이트)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또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붕 상부에서 작업이 수행된 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 건설업의 경우 본사 산재관리번호로 신청

※ 지원제외대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현장(400**)인 경우 등

《 채광창 안전덮개 반드시 설치하세요 》

(*21.11.19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2 지원설비



지원조건

- 지원금액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세부기준

-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성능 및 제작기준에 부합한 제품(뒷면참조)

3 지원절차



4 문의처



전국 대표번호 1544-308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 지역별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채광창 안전덮개 성능 및 제작기준



성능기준

◦ 휨 성능

보강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덮개를 단순 거치한 상태에서 중앙부에 직경 150mm이상의 원형지그 또는 150×100mm이상의 사각형지그로 수직하중 2,000N* 재하 시 견딜 것(시험 속도는 분당 30mm 이하)

* 작업자 몸무게 + 운반자재 중량 + 충격

◦ 미끄러짐 성능

90° 경사진 샌드위치 패널 또는 칼라강판(이하 “지붕재”라 한다)에 설치하였을 때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을 것

* 미끄러짐 성능은 -30℃~80℃의 온도범위에서 유지될 것

◦ 처짐

수직하중 2,000N에서 L/20mm* 이하이고, 최대 60mm 이하일 것

* L: 휨 성능시험 시 안전덮개가 지지되는 내측길이(mm)



제작기준

◦ 재료

알루미늄 합금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무게는 5kg 미만일 것

◦ 구조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의 사각형으로 높이는 0.1m 미만이고, 격자형 덮개의 경우 한 변의 순길이 (Net length)는 100mm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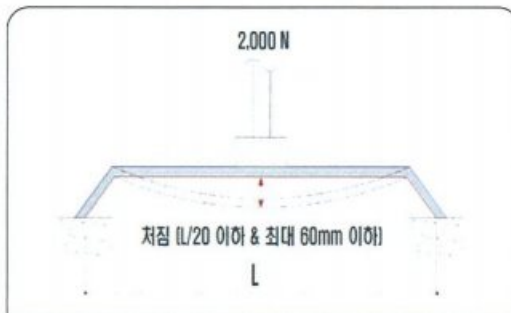
* 길이: 안전덮개를 지붕재 위에 설치 시 채광창을 가로지르는 방향

지붕재 위에 설치 시 볼트 등의 천공이 아닌 탈착이 가능한 구조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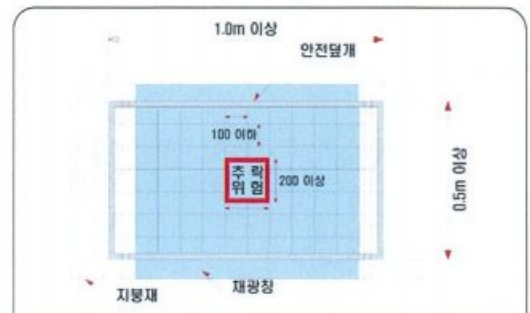
안전덮개는 지붕재와 맞닿는 위치에서 밀착되는 구조일 것

◦ 표식

안전덮개가 개구부임을 알 수 있도록 중앙부에 200×200mm 이상의 크기로 추락위험에 대한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의 표지를 설치할 것



단면도 (성능기준: 처짐)



평면도 (제작기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1 지원대상

-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2 지원조건 및 절차

-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조건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임대비만 지원(조건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재료비) 공사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지원절차



3 신청기간 및 장소

- ▶ 기간 : '23년 1월~재원소진 시까지 ※ 연간 3회까지 지원(20억 미만: 6개소, 3억 미만: 9개소)
- ▶ 장소 :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clean.kosha.or.kr) 또는 오프라인(우편·직접 방문) 접수

4 지원설비

- ▶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이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 낙하물방지망(플라이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44-3088) 및 지역별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1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71
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42
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36
5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6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95
7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79
8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36
9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17-7525
10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94
11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66
1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52
1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5
14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33
1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3
16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94
17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53
18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12
1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33
20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84
2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259-7135
22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51
2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33
2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87
2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74
26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37
27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24
28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35
29	충북동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23
30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58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78	창원지청	02-2250-5778
서울남부지청	02-584-0009	울산지청	02-584-0009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왕산지청	02-2142-8872
서울서부지청	02-2077-6172	진주시청	02-2077-6172
서울남부지청	02-2639-2290	통영지청	02-2639-2290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2-950-9831
서울관악지청	02-3281-0009	대구서부지청	02-3281-00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6248	포항지청	032-460-6248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6	구미지청	032-540-7980-6
부천시청	032-714-8780-90	영주시청	032-714-8780-90
의정부지청	031-850-7631	안동지청	031-850-7631
고양지청	031-931-286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31-931-2864
경기지청	031-259-0252	전주시청	031-259-0252
성남지청	031-788-1528	익산시청	031-788-1528
안양지청	031-463-7351-6	군산시청	031-463-7351-6
안산시청	031-412-1974	목포지청	031-412-1974
평택지청	031-646-1182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31-646-1182
광명지청	033-269-3581-7	여주시청	033-269-3581-7
강릉지청	033-650-25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33-650-2525
원주지청	033-769-0827	청주시청	033-769-0827
태백지청	033-552-8603	천안지청	033-552-8603
영월출장소	033-371-6240	충주시청	033-371-624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498	보령지청	051-850-6498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서산출장소	051-559-6670
부산북부지청	051-309-1556	-	-

일선기관명	연락처	일선기관명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02-6711-2828	제주지역본부	064-797-7525
부산광역본부	051-520-0618	서울남부지사	02-6924-8733
광주광역본부	062-949-8756	서울동부지사	02-2086-8026
대구광역본부	053-609-0548	대구서부지사	053-650-6855
인천광역본부	032-510-0568	경기북부지사	031-828-1962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35	고양파주지사	031-540-3823
울산지역본부	052-226-0528	경기중부지사	032-680-6584
경기지역본부	031-259-7122	경기서부지사	031-481-7531
강원지역본부	033-815-1059	경기동부지사	031-785-3330
충북지역본부	043-230-7142	강원동부지사	033-820-2512
충남지역본부	041-570-3424	충북북부지사	043-849-1032
전북지역본부	063-240-8533	전북서부지사	063-460-3641
전남지역본부	061-288-8737	전남동부지사	061-689-4934
경북지역본부	054-478-8035	경북동부지사	054-271-2023
경남지역본부	055-269-0525	경남동부지사	055-371-7562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이란?

작업환경측정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제1항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 ▶ 최대 100만원 지원 과거 3년동안(2020년 이후) 측정 미 실시 사업장 측정 비용의 80% 지원 ▶ 최대 40만원 지원

* 측정 비용은 공단 신청 금액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건설임용직 근로자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미만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인 미만 ▶ 측정 비용의 전액 지원 30인~50인 미만 ▶ 측정 비용의 90% 지원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비용의 90% 지원 건설임용직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억 미만 ▶ 측정 비용의 전액 지원 50억~800억 미만 ▶ 측정 비용의 80% 지원 800억 이상 ▶ 측정 비용의 7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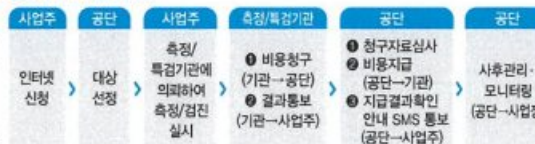
* 산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른 제 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비용지원

* 측정 비용은 공단 신청 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 - 접수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신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신청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23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사업 지원 절차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대상(2종)

- 산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1조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 산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조 별표 23
- 배치전
-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여부를 판단하므로 배치전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의 소리

"보통 3-4시간 정도 자는데 중간에 야간 순찰 순번이 있으면 중간에 깨야하고, 간혹 주민들 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깨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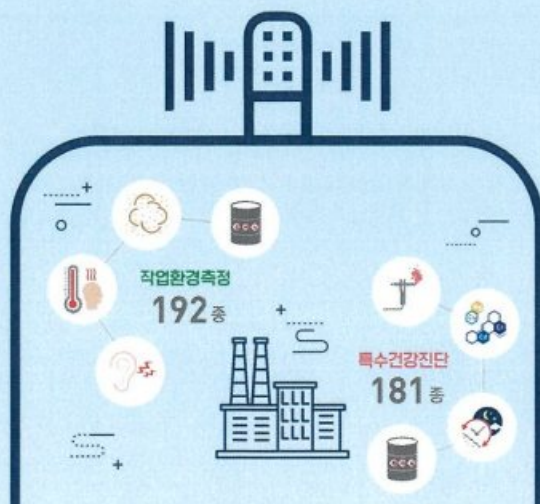
"야간에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매우 피곤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위장질환이 끊이지 않으며, 항상 수면부족에 시달립니다."

"밤에는 일이 거의 없어도 잠수는 없어요. 중간 중간 어르신들이 부르면 가야하고, 또 기저귀를 간간히 갈아야 해서 자면 안되죠.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는 밤새 보살펴야 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시간에 해당 된다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잠정기관의 사후관리조치 의견에 따라 건강관리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들 We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우리는 일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됩니다. 도장작업, 용접작업, 배합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절삭, 절단, 연마작업을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소음 등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유해물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양한 작업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



유해환경에서 일한다면 건강상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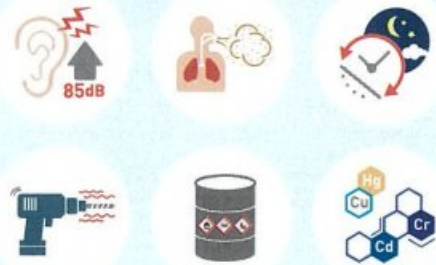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냄새나 눈, 귀로 느낄 수 있으나 유해물질에 따라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유기용제 중 상당수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몸 속으로 들어온 유해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근무 재배치,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면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로 인한 나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위반시 벌칙

-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실시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로 각종 유해인자(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81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건강진단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내, 이후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실시방법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위반시 벌칙

-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 안내



화학물질, 분진, 조리용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건강보호를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1644-8845(안전보건공단)

1.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포함)

*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2.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5,000** 만원(조리용은 최대 2,500만원)

대상 사업장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70%(자체부담 3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50%(자체부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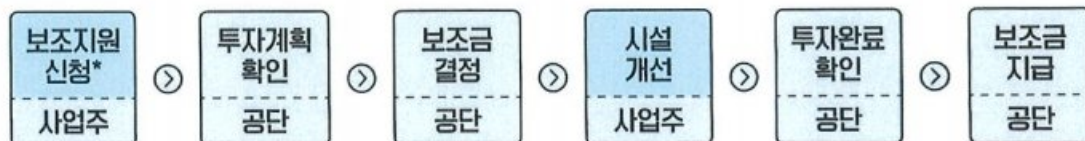
3. 지원대상 품목

- ◎ 허가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분진·고열작업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 조리용 발생작업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 고열작업장에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

※ 실내작업장에 설치(신규설치 또는 전부 교체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4. 지원절차



*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

※ 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 공지사항

5. 시행기간

◎ 재원소진시까지 ※ 접수순으로 진행하되, 신청상황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대표전화 : 1644-8845)

공단 일선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

※ 신청서류 안내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 공지사항

연번	일선기관명	연락처	주소	관할지역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26	(04512)서울특별시 중구 칠재로 42, 7층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	서울동부지사	02-2086-8024	(05836)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3	서울남부지사	02-6924-8734	(0725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8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강원지역본부	033-815-1057	(24436)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5	강원동부지사	033-820-2571	(25512)강원도 강릉시 하늘리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	부산광역본부	051-520-0614	(46274)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4~7층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46	(44713)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055-269-0524	(5143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9	경남동부지사	055-371-7563	(50635)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4층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10	광주광역본부	062-949-8753	(6236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우산동, 광주우역회관빌딩) 8,9,11층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063-240-8532	(5501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2	전북서부지사	063-460-3643	(54001)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38	(58566)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우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33	(5964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15	제주지역본부	064-797-7524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특별자치도
16	인천광역본부	032-510-0564	(21417)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인천광역시
17	경기지역본부	031-259-7160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
18	경기북부지사	031-828-1963	(11780)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안천군), 강원도(철원군)
19	경기서부지사	031-481-7519	(1546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고전동) 2층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20	경기동부지사	031-785-3328	(1355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21	경기중부지사	032-680-6584	(1454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3층 (상동, 대신프라자)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22	고양파주지사	031-540-3822	(10390)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23	대구광역본부	053-609-0544	(41936)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24	대구서부지사	053-650-6856	(42661)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5층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25	경북지역본부	054-478-8034	(39390)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임수동)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26	경북동부지사	054-271-2022	(3782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27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34	(34122)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28	충북지역본부	043-230-7142	(2839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기경로 161번길 20 (기경동) KT 3층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29	충북북부지사	043-849-1033	(27478)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1층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30	충남지역본부	041-570-3425	(31169)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주요서비스



이용방법

근로자건강센터(분소) 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시업장 요청 시 이동상담 서비스 제공가능

분야별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
- 작업환경 및 생활습관(금연, 운동, 영양, 절주) 개선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를 통한 직업병 예방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자

※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사전문의(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설치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기의 맞춤형 건강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운영인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
전액 무료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저녁 9시)
※ 센터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사전 문의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대표번호 : 1577-6497
※ 센터별 소재지 및 연락처는 뒷면 참조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소규모 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나의건강노트

◆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앱(나의건강노트)

“나의건강노트”란 노동자가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근로자건강센터(분소)의 모바일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입니다.

🔍 이용방법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나의건강노트”를 다운로드 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기능

- 나의 건강 정보 이력 조회
- 비대면 건강상담 및 건강설문
-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분소) 방문 예약
-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및 직업건강정보 제공

근로자건강센터(23개소) 현황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타워2층)	02-6947-5700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A동 14층)	02-2093-2650
인천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 4층)	032-260-3661
부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전로 22 (부천테크노파크1단지관리동3층)	032-329-9161
경기북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조길 82 (검조공단지원 4층)	031-858-9030
경기서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시화지점 3층)	031-364-7680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12층)	031-739-9301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피아이빌딩C동 2층)	031-205-8960
강원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6층)	033-745-7289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가 1층)	042-936-9571
충북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	043-218-9415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V빌딩 2층)	041-522-8993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 7층)	053-585-5501
경북북부	경북 구미시 헤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	054-475-2511
경남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 2층)	053-853-8579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혁신디지털밸리1층)	051-329-7300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052-201-9960
경남	경남 창원시 상산구 원암로 50 (상원 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층)	055-713-2400
광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센터2층)	062-955-6497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성로 47 (KT팔복지사 2층)	063-211-9988
전남동부	전남 여수시 무신중영로 23 (YM빌딩3층)	061-692-9640
전남서부	전라남도 영암군 심호읍 나불로 163, (리베르티대를 관리동 2층)	061-462-29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영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064-752-8961

분소(21개소) 현황

분소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중구	서울 중구 퇴계로197 (충무빌딩3층)	02-2268-6497
서울성동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26 (서울숲A타워 3층)	02-6077-7500
인천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리어스밸리 A동 지하1층)	032-528-1155
김포고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리우로 58번길105-1 (유호빌딩2층)	031-998-9165
김포양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예리존 나동 243호)	031-999-7602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신관프라자 2층)	031-572-9032
군포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148번길 17 (군포아이티밸리A동1202호)	031-8086-7195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한 하이텍스A동 지하1층, 127호)	031-698-2990
평택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성은상가 1층)	031-663-8953
춘천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033-262-2788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층 405호)	041-547-7993
서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1길 33	053-584-2406
대구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곡읍 노곡중앙로 34길1 (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3-617-9701
영천	경북 영천시 금원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	054-338-8541
구미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213호)	054-465-2511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대명동3길 2	055-385-7301
울산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북구오도밸리복지센터 4층)	052-288-7772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6호)	070-4270-0240
광주광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062-941-6497
원주	전북 원주군 봉동읍 과회로 850-15 (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1층)	063-262-7733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길9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1층)	064-745-8961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밀폐공간,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1644-8595** 로 연락주시거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One-Call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밀폐공간 : 반드시 사방이 꼭 막힌 공간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

One-Call 서비스란?

전화 한 통(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안전교육, ③ 장비대여, ④ 기술지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

무상서비스 내용

가스농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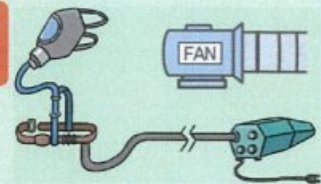


안전 교육



기술 지도

장비 대여



① 가스측정기 ② 환기팬 ③ 송기마스크

신청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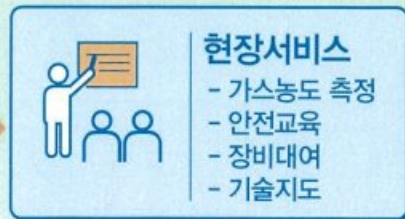


전화(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장



접수



현장서비스

- 가스농도 측정
- 안전교육
- 장비대여
- 기술지도



장비회수

안전보건공단(One-Call 서비스 수행기관)

※ 밀폐공간작업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밀폐공간 주요 질식재해사례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 집수조 내 펌프교체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 사망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침전조내 센서교체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 사망

맨홀



하수관거 공사현장 관로확인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 사망

지하 집수정



건물 지하 집수정 내 수중모터 수리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3명 사망

화학설비



반응기 내부 청소작업 중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1명 사망

콘크리트 보온양생



콘크리트 양생 깔탄보충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

※ 기타 질식재해 발생장소 : 정화조, 상하수도관, 저장용기, 용접배관, 집진설비 등 내부

질식위험공간 안전작업절차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 체크!!



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적정공기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2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3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4 무단 출입금지(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

근로자가 어떤 유해·위험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본인이 직접 측정하고 결과를 안내받는 사업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신청 가능 할까요?

작업장에서 본인이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노출정도 및 관리방법 등을 알고 싶은 모든 근로자

- 측정가능 물질은 현재 165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되어 악취(기름 냄새 등)를 발생시키며, 일반적으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들어와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 대표적으로 세척제나 페인트 등에 함유된 노말헥산, 벤젠, 톨루엔 등이 있으며, 석유, 화학, 섬유, 금속가공 업종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 시료채취기(확산 모니터)는?
 -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이 확산되어 시료채취기 내부의 활성탄층에 포집되는 원리입니다.



이용방법

01

홈페이지 접속

www.kosha.or.kr/selfcheck 또는 하단의 QR 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PC 및 모바일 활용)

02

로그인(휴대폰 번호로 인증) 후 시료 신청
※ 시료 신청은 반기에 1회 가능 (1회 신청시 4개까지 가능)

03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시료 발송 및 시료 수령

04

안내에 따라 작업중 시료채취 실시

05

시료채취가 마무리 되면 공단 분석실로 시료 발송(착불)

06

시료접수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

07

(필요시)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공단 전문가 컨설팅 요청
※ 접수부터 결과 진행사항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제공

화학물질노출정보알리미

※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시료채취 결과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분석결과서 보는 법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분석결과서

※ 본 결과서의 분석 결과는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호조치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법적효력 없음)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기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시료채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측정 상황에 따라 검출되지 않는 인자가 있을 수 있으니, 동일한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명 : ○○○○○○

○ 채취일자 : 2020-08-28

시료에서
채취된 물질

위험수준에 따른
조치단계 표시

연번	시료명	채취시간(분)	분석물질명	노출수준 ¹⁾	위험수준 ²⁾	개선조치 단계 ³⁾
1	작업자이음	345	조산에틸 아세톤 톨루엔	보통 보통 보통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필요
2	작업자이음	345	조산에틸 아세톤 톨루엔	대우높음 높음 높음	대우높음	즉시개선필요
3	작업자이음	345	조산에틸 톨루엔 아세톤	대우높음 보통 보통	대우높음	즉시개선필요

¹⁾ 노출수준 : 낮음(기준대비 10% 미만), 보통(기준대비 10%~50%미만), 높음(기준대비 50%~100%미만), 대우높음(기준대비 100% 초과)

²⁾ 위험수준 : 시료별 검출된 물질의 "노출수준"을 모두 고려한 구분으로 노출수준의 구분기준과 동일함

³⁾ 개선조치 단계 : "위험수준"에 따른 관리(개선)가 필요한 정도 및 긴급함을 표기함

농도 등을 반영
'위험수준' 표시

☑ 조치사항 : 분석결과서와 같이 확인 가능한 CHEM-i*를 통해 취급주의사항 파악

* MSDS 필수정보 확인프로세스(CHEM-i : Componet, Hazzard, Exposure, Management(=eye)는 사업장에서 MSDS 중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정보(물질정보, 주의사항, 예방책, 사고시 대응책)를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톨루엔
Toluene

C 어떤 물질일까요?
Component and Content

H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Hazard and Storage

눈 : 눈노출 시 즉시 세척
신경 : 호흡기 자극
흡입 : 흡입 시 자극
생식 : 피부 자극

E 어떻게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Exposure control and PPE

M 사고 시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Management of Emergency

중요조치 요령

- 눈에 묻어 접촉 시 : 즉시 흐린 물로 15분 이상 세척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즉시 오염된 옷을 갈아입고 물로 씻어내기
-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로 이동하고 휴식
- 복합된 경우 :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주의사항

-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지원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아니며, 근로자의 근로환경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또한 채취시료 분석결과는 근로하는 작업장의 환경에 대한 정보획득만을 위해 사용하는 목적 이외에, 타 목적(분석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목적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중상해 및 사고사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추진절차



- 0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0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총 공시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가능
- 0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0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전화번호) : 제민옥 과장(055-269-0553)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소개

구분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인정
소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작성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절차를 만족하는 등 심사기준에 충족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대상	<input type="checkbox"/>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전 업종(건설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건설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 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input type="checkbox"/> 건설업종: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신청방법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신청 (사업장 회원가입 필요) ※ 컨설팅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정책에 따라 공단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미만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KOSHA-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50인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 기술보증기금보증실행시최초3년간보증비율100%적용, 보증요율0.2%p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 → 100억)
- 무역보험공사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